

2005년 12월 13일 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



- ▶ 2005. 12. 12 배포
- ▶ 총 3쪽 (사진없음)

## 보도자료

- ▶ 고용보험정책팀 이수종사무관  
T E L : 503-9750  
E-MAIL : rhy001@molab.go.kr  
F A X : 502-2714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#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는 전자카드로 -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-

- 노동부는 노동시장 양극화, 일자리 부족, 비정규직의 증가 등의 노동시장 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·공포한데 이어 세부시행 사항 마련을 위해
  - '05.11.22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
  - '05.12.13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다.
- ※ 고용보험법령의 주요개정 내용 :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·운영, 그 지원대상과 사업범위 확대
-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카드신고제를 시행한다.
  - 건설근로자에게는 전자카드를, 건설공사 현장에는 카드리더기 등을 무료로 공급하는데, 전자카드의 체크로 고용보험에 관한 모든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, 출퇴근,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도 종합 처리되며,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.
  - 동 제도의 시행으로 구직급여 등 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보험 수혜율의 상승과 건설현장의 업무부담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장연령을 '06·'07년에는 57세, '08년에는 58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.

※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기존의 연공급 등 임금체계 및 고용불안의 문제점을 노사가 합의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연령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'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, 해당된 근로자는 재직 중 54세부터 6년간 지급받을 수 있음

○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**갑종근로소득세 납부기준**으로 산정하고

- 질병, 쟁의행위 등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은 임금 삭감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며 수당지급은 반기별로 지급된다.

□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정하고,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.

○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1할로 하되,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사업은 하한액 1만원·상한액 300만원으로 하고, 실업급여,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하한액 1만원·상한액 50만원으로 하며, 1인당 연간지급 한도를 전자는 300만원, 후자는 100만원으로 정하였다.

○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급 받은 구직급여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데, 경미한 위반행위,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의 경우가 많아 반환명령의 기준을 마련하였다.

- 우선 1회 위반한 경우는 위반한 날이 속한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고,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한 날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면 된다.

- 또한 위반행위가 **일용근로자로만 취업**한 경우에는 전자와 관계없이 취업한 날이 속한 **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**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.

□ 기타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을 확대하고, 민간훈련시설 비용 대부요건을 완화하며, 자격검정비용 지원업무를 개선하였다.

○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외에 국공립시설의 지원수준에 맞춰 **보육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** 취사부에 대하여도 지원한다.

○ 훈련시설·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비용을 대부받는 조건 중 **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확인기간을 부지는 30년에서 15년으로, 건물은 20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함**으로써 훈련시장의 진입조건을 낮추는 효과와 함께 경쟁 훈련체계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.

○ 두번째 이후의 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**교재비 및 수강료의 일부**를 지원하는데 영수증에 세부내역이 기재되지 않는 등 내역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간의 **평균지원액 수준인 10만원**을 채택하여 정액을 지원하도록 개선하였다.

【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 】

# 보 도 참 고 자 료

2005. 12.

노 동 부  
고용보험정책팀

# 1. 전자적 방법에 의한 피보험자격 의 신고 및 장비 등 지원

## □ 제 · 개정 이유

- 법 개정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 신고에 대한 시행사항을 마련할 필요
  - 지원대상, 범위, 절차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근거 마련

## □ 제 · 개정 내용

-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는 “사업주,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일용근로자로 하여금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일일근로내역을 신고하는 것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
- 전자카드, 카드리더기 및 전자적 방법의 운용에 필요한 물품(교통카드 충전액, 거치대 등)의 지원 근거 및 절차 마련
  - 장비 등은 정부가 동일규격을 구매하여 무상 보급
  - 지원 장비대수,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규정

### <전자카드시스템 운영절차>

- 근로자는 건설현장에 보급·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전자카드를 접촉하여 일일의 근로내역을 체크
  - ※ 건설현장에 장비(전자카드, 카드리더기, 프로그램 등) 보급 및 설치
- 사업주는 체크된 근로내역을 컴퓨터를 통해 중앙고용정보원으로 실시간 전송
- 고용안정센터는 중고원이 전송한 근로내역을 실업급여 지급 등의 업무 처리에 활용

## <전자카드 사업 추진내용>

### □ 사업목적

- 현재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신고 등을 서면 또는 EDI방식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을
  - 실시간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전자카드에 의한 방식을 보급·정착시키기 위함
- 전자카드에 의한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노사에게 업무편의를 제공하는 효과 기대
  - 근로자는 실시간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,
  - 사업주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,
  - 고용안정센터는 입력 등에 따른 업무가중을 줄일 수 있음

### □ 사업내용

#### ○ 추진경과

- '99. 5~8월 국무총리실 『실업대책 기획평가단』에서 일용 근로자 고용보험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
- '02. 7.15 일용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피보험자격 관리를 위하여 전자카드에 의한 피보험자 관리시스템 도입방안 결정
- '04. 1.12 『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운영 지원단』 구성·운영
- '04. 1~6월, 9~12월 전자카드 제1차 시범사업 실시(지방청별 3개소씩 18개 건설현장)
- '05. 4~6월 전자카드 제2차 시범사업 실시(서울지역 5개 건설현장)
- '05. 10월~'06. 3월 「전자카드 지역단위사업」 추진중(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의 공사금액 200억 이상 건설현장)

#### ○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

- 사업시행주체 : 노동부 및 지방노동관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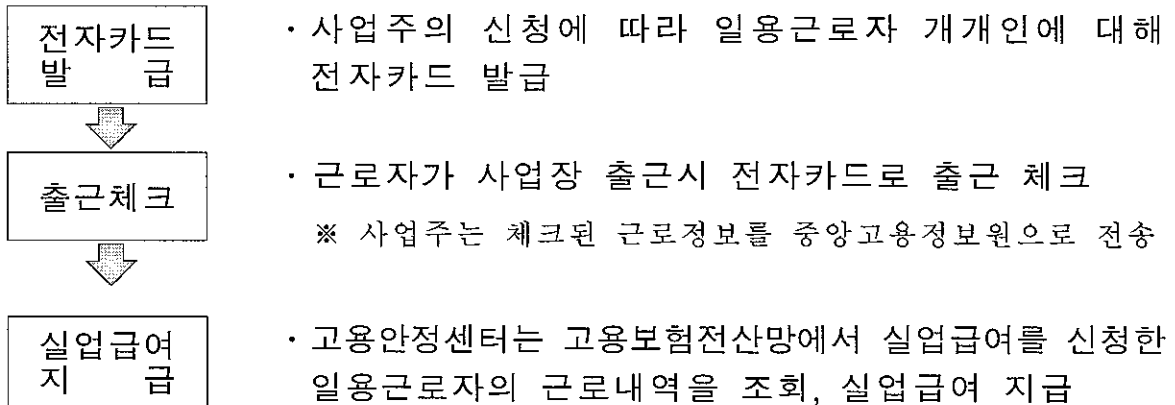
- 사업집행절차

- 지원조건 : 카드리더기등을 무상 임대 설치하고 전자카드는 무상지원

○ 사업기대효과

- 실시간 피보험자격 관리로 수급자격 인정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여 민원발생 해소

※ 현행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방식인 서면 및 EDI에 의한 신고는 근로내역에 대한 실시간 파악이 곤란,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지연



- 사업주의 신고편의 제고와 센터의 피보험자격 업무가중 해소

- 근로자의 근로경력이 전산 관리되어 건설업 등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, 관련 정책수행에 활용 가능

○ 향후 계획

- 전자카드 지역단위사업 실시('06. 3월까지)

- 지역단위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 후속대책 추진

## 2. 임금피크제에 의한 고용보장연령 및 지원금액 산정 등

### □ 제정 이유

-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요건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여야 할 고용보장연령, 지원금의 산정기준, 제외 사유를 정하고 신청 절차 등을 규정

### □ 제정 내용

- 고용보장연령은 2006년 및 2007년은 57세, 2008년은 58세로 하고
- 지원금 산정은 갑종근로소득세 납부기준으로 하며
- 다음 사유로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
  -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
  - 질병 또는 부상
  - 사업장의 휴업, 근로시간의 단축, 쟁의행위
  - 그 밖의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
- 지원금 신청서등 관련 서류를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토록함

### □ 관련단체 등 의견

- 경영계는 개별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용보장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

### 3. 직장보육시설지원 확대

#### □ 개정 이유

- 현재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수준은 직장 여성의 보육 수요 및 국공립시설의 지원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
- 사업주가 설치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활성화 도모
  - ※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'05년(여성근로자 300인 이상) 254개소→'06년(근로자 500인 이상) 637개소
-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보육시설종사자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부 지원 확대 필요
  - ※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('05.6월) 146개소(의무 57개소, 자발적 참여 89개소)  
직장보육교사 등 지원은 108개소에 58억원, 시설지원은 12억원('05.11월)

#### □ 개정 내용

- 보육시설의 장에 대한 지원 기준을 유아의 수 40인을 20인으로 확대하고, 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 취사부까지 지원함

#### 4.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비용 대부요건 완화

##### □ 개정 이유

-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간 훈련기관의 설립 및 시설·장비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나
  - 현행 훈련비용 대부제도는 원리금 상환기간에 비해 사용 확인기간이 장기이어서 대부받은 자의 부담이 커 민간훈련참여 저조의 원인이 되고 있음
    - ※ 원금상환기간은 10년이나 사용 확인기간은 20년 이상으로 설정
    - ※ 연도별 민간 직업훈련기관 대부 실적 : '03년, 3개소 16억원 → '04년, 1개소 2.5억원 → '05.8월, 6개소 70억원
    - ※ 직업능력개발혁신방안('05.11.29)에 포함된 사항

##### □ 개정 내용

- 대부금 사용 확인기간 단축 : 부지 30년→15년, 건물 20년→10년

#### 5. 검정수수료 정액 지원

##### □ 개정 이유

- 검정수수료 또는 수강료는 검정기관이나 훈련기관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
  - 교재비는 제출되는 (간이)영수증에 그 내역이 기재되지 않아 실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
  - 그 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액 지급을 추진

##### □ 개정 내용

- 교재비·수강료의 정액은 자격취득시 소요되는 실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하되
  - 최소비용이 소요되는 독학을 기준으로 10만원으로 책정
  - ※ 검정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실제부담비용 전액 지급

○ 지원금 신청시 교재비·수강료 등의 영수증 첨부을 생략하고 일정액을 지원함으로써 민원인 편의제공 및 업무처리 간소화 효과 기대

○ 자격취득 소요비용 조사현황

(단위 : 만원)

구 분	기능사	산업기사	기 사	기능장	기술사
평 균	26.8	35.3	23.4	56.9	126.1
독 학	8.5	8.2	8.7	-	-
훈련기관 수강	8.8~50.6	22.7~62.5	7.1~45.8	-	-

※ 한국노동연구원 『자격취득자 실태조사』, 2002

○ 연도별 검정수수료 등 지원현황

(단위 : 명, 천원)

구 분	'01	'02	'03	'04	'05.11
인 원	5,584	5,283	2,637	3,801	4,834
지원금액	594,519	580,711	297,652	488,075	618,789

※ '05년 예산 566,000천원(고용보험기금)

## 6. 부정 수급한 구직급여의 반환 명령 금액 조정

### □ 제정 이유

- 현행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 명령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이 업무지침에 의거 조치
  - 전부 반환하거나, 1회 위반에 한하여 당해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구직급여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
- ※ 법 제48조(반환명령등)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(이하 생략)
- 부정수급에 대한 발견은 대부분 구직급여의 수급이 완료된 후에 확인되고 있는 바,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는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수급한 급여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1회 위반의 경우와 형평이 맞지 않거나
  - 영세근로자의 법령 미숙지 등 과실로 인한 경우 위반에 비하여 반환명령 금액이 가혹할 수 있어 반환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정비할 필요가 있음

### □ 제정 내용

- 부정행위에 의한 반환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에 대하여 반환하고
  - 1회 위반한 자는 당해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하여 반환하며,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취업한 날에 대하여만 반환하도록 함
  -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경우에도 당해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하여 반환하도록 함

## 7.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기준 등

### □ 제정 이유

-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필요
- 그 동안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처분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부정행위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
- 실업급여 등에 관한 부정행위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후점검 체계만으로는 관계자의 담합에 의한 부정을 방지하는데 한계

### □ 제정 내용

- 포상금 지급기준은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
- 포상금액은 부정수급액의 10/100으로 하되, 최저한도는 1만원으로 하고
- 최대한도는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은 300만원, 실업급여 등은 50만원으로 하며, 연간 1인당 포상한도는 각각 300만원, 100만원으로 함
- 절차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을 받아 14일 이내에 지급
- 이미 공개된 내용이나 조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
- 공무원등의 직무와 관련된 신고, 부정행위자 본인의 신고, 익명의 신고, 사전공모 등의 신고를 제외하며
- 지원 또는 급여등이 지급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제외함

## 별표1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금의 지급기준

부정 행위	포상 기준
1. 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행위	부정수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,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, 상한액 및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.
2. 법 제47조·법 제48조 및 법제54조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	부정수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,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,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하되,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.
3. 법 제55조의6 또는 법제55조의9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은 행위	

### □ 다른 법령의 사례

#### ○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포상금 지급기준

부정행위	포상금액
1. 법 제16조제2항제1호의 행위	훈련과정당 50만원
2.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행위	
3.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행위	부정수급액의 30/100 하한액은 30만원, 상한액은 300만원
4.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행위	
5. 법 제16조제2항제3호의 행위	훈련과정당 20만원
6. 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행위	

#### ○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

- 부정수급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하한액은 1천원, 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함
-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미만은 15%, 1천만원~5천만원은 1천만원초과분에 대하여 10%를 추가, 5천만원 이상은 5천만원초과분에 대하여 5%를 추가하여 지급

#### ○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에 대한 포상금 기준

- 지급된 부정수급액의 3/100(최저 3만원, 최고 100만원)